

번호 17-1

제 목	국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영문	The Evolution of Health Related Law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영문	Myong-sei Soh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O)	발 표 자	일반회원 (O)	발표 형식	구 연 (O)
	역 학 () 환 경 ()		전 공 의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O),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정부수립 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보건의료법률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 양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적으며 보건의료법률체계의 구조와 전관을 보여 주는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예방의학자들은 보건의료법률을 정책 구현의 단순한 수단으로 폄하해왔고, 법학자의 입장에서라도 그리 방대한 행정법의 양으로 인해 보건의료부분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의 의약분업 사태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보건의료부분의 파행적 현상들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장기적 안목없이 편의주의적 행정입법에 의해 보건의료관련법들이 제정된데 기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입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복후 현재까지의 보건의료법률 변천사와 법률체계 전관을 조망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의 개선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첫째, 보건의료법률을 그 목적이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과의 관계에서 그 체계를 검토한다.

둘째, 보건의료법률체계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변화와 정치권력과의 함수관계 및 사회의 변화를 구분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에 제정된 주요 보건의료법률을 살펴 본다.

셋째, 앞에서 결정된 보건의료법률의 유형과 시대구분에 따라 주요한 변화를 살펴본다.

넷째, 보건의료법률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 결과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법규체계를 ①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가의 공공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법률, ③ 특정인구집단의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 ④ 특정질환 관리에 관한 법률, ⑤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로 부문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부문별 보건의료행정법제의 제정 및 전면개정을 중심으로한 주요변화에 대해 변천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수립전까지의 '조선의료령 의용시기', 정부수립 후 제2공화국까지의 '기초적 보건의료법률 형성시기', 5.16혁명 이후 제4공화국까지의 '보건의료법률의 양적 확대시기/형식적 의료보장입법시기',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부터 노태우 정부까지의 '의료보장 법률의 확대시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법률의 체계적 정비시기' 등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고찰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관련법들은 광복이후 일본의 법체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관련법률체계를 재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 요망된다. 보건의료법규체계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 1)보건의료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법체계가 포괄적, 효과적, 형평적, 효율적인 형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 2)헌법 등 상위법과의 수직적 정합성 뿐 아니라 개별보건의료법령간의 수평적 정합성을 갖추도록 한다.
- 3)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의료현실을 반영한 법제정 및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4)법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집단과 관료집단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이 환류기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5)의료법학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여 연구결과가 보건의료법률제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